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7 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서영교 · 한정애

박 정・이성윤・이기헌

한민수 · 임미애 · 김용민

강유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.

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음.

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,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 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, 응 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·도, 시·군·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 고,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(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"을 "시·도, 시·군·구와 수사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와 수 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,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 시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	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		
절차) ① (생 략)	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2		
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			
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			
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			
우에는 <u>시·도, 시·군·구 또</u>	<u>시·도</u> , 시·군·구와		
<u>는 수사기관</u> 에 즉시 신고하여	<u> 수사기관</u>		
야 한다.			
1. ~ 26. (생 략)	1. ~ 26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		
	를 받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		
	와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		
	범죄 신고를 접수한 「아동복		
	지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		
	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		
	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, 피		
	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, 아		
	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		
	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		
	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		
	<u>한다.</u>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